

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[별표 3]

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(제27조제1항관련)

구 분	임 용 기 준
교과담당 강 사	1. 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.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.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 학위를 가진 자
상담담당 강 사	1. 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 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. 상담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
사서담당 강 사	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자